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07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김승원 · 한병도 · 강준현
김남근 · 민병덕 · 김종민
문대림 · 이광희 · 이건태
임호선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④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52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